

# 변경 대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(K-5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2 월 24 일

4. 대비표

[ 신탁계약서 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7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(생략) 1.~7. (생략) 8. <u>전자단기사채</u> 등	(현행과 동일) 1.~7. (현행과 동일) 8. <u>단기사채</u> 등
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① (생략) 1. (생략) 2.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(다만,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<u>전자단기사채</u> 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어음(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)의 경우 "5%"는 "3%"로, "2%"는 "1%"로 적용한다.)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	① (현행과 동일) 1. (현행과 동일) 2.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(단, <u>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다)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<u>단기사채</u> 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어음(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)의 경우 "5%"는 "3%"로, "2%"는 "1%"로 적용한다.)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

	<p>있다.</p> <p>가.~나. (생략)</p> <p>3.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(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-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</p> <p>② (생략) 1.~4. (생략) 가.~다. (생략) 라. <u>전자단기사채</u></p>	<p>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~나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(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-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, <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</u>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 1.~4. (현행과 동일) 가.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<u>단기사채</u></p>
--	---	--

[ 간이투자설명서 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<p><b>투자비용</b> (생략)</p> <p><b>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</b> (생략)</p>	<p><b>투자비용</b>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</p> <p><b>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</b> (업데이트)</p>

	<b>운용전문인력</b> (생략)	<b>운용전문인력</b>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 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 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	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 구 에 관 한 사 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2 월 2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		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 구 에 관 한 사 항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생략)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																
	<b>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 가. 투자대상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06 924 906 113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자 단기 사채 등</td> <td>-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나. 투자제한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06 1228 906 1890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동일 종목 투자</td> <td>-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(다만,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어음(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)의 경우 "5%"는 "3%"로, "2%"는 "1%"로 적용한다.)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전자 단기 사채 등	-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	구분	내용	동일 종목 투자	-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(다만,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어음(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)의 경우 "5%"는 "3%"로, "2%"는 "1%"로 적용한다.)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다	<b>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 가. 투자대상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3 924 1433 113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기 사채 등</td> <td>-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나. 투자제한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3 1228 1433 1890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동일 종목 투자</td> <td>-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(단,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다)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단기 사채 등	-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	구분	내용	동일 종목 투자	-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(단,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다)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
전자 단기 사채 등	-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																	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
동일 종목 투자	-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(다만,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어음(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)의 경우 "5%"는 "3%"로, "2%"는 "1%"로 적용한다.)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다																	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
단기 사채 등	-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																	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
동일 종목 투자	-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(단,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다)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"5%"는 "1%"로, "2%"는 "0.5%"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																	

	<p>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.~나. (생략)</p>	<p>아니하며, 어음(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)의 경우 "5%"는 "3%"로, "2%"는 "1%"로 적용한다.)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.~나. (현행과 동일)</p>
	<p><b>기타 투자 제한</b></p> <p>-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(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-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<b>기타 투자 제한</b></p> <p>-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(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-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, <a href="#"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에금증서를 취득한 금액</a>은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(현행과 동일)</p>
	<p><b>투자 한도</b></p> <p>① (생략) 1.~4. (생략) 가.~다. (생략) 라. <a href="#">전자단기사채</a></p>	<p><b>투자 한도</b>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 1.~4. (현행과 동일) 가.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<a href="#">단기사채</a></p>
<p>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</p>	<p><b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b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</p>	<p><b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b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</p>

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3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6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<b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<b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<b>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(생략)	(업데이트)
<b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